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072
----------	-------

발의연월일 : 2025. 6. 25.

발 의 자 : 박민규 · 김남근 · 김용만
김우영 · 민병덕 · 이학영
정동영 · 정혜경 · 최민희
황정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을 받으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경찰청을 경유하여 전기통신역무 중지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 중지 요청이 증가하면서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전화번호 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이용해 불법채권추심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에 이용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지 요청 주체를 수사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전화번호 외에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대한 전기통신역무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채권추심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전기통신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3 신설 및 제32조의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3. “사회관계망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역무를 말한다.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 행정기관의”를 “수사기관의”로, “전기통신번호(연결되어 있는 착신회선의 전기통신번호를 포함한다)에”를 “전기통신번호(연결되어 있는 착신회선의 전기통신번호를 포함한다) 및 해당 이용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의2. (생 략) <u><신 설></u> 13. ~ 17. (생 략) 제32조의3(전기통신업무 제공의 제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u>관계 행정기관의</u> 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u>전기통신번호(연결되어 있는 착신회선의 전기통신번호를 포함한다)</u> 에 대한 전기통신업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2조(정의) ----- -----. 1. ~ 12의2. (현행과 같음) 12의3. “ <u>사회관계망서비스</u> ”란 <u>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영무를 말한다.</u> 13. ~ 17. (현행과 같음) 제32조의3(전기통신업무 제공의 제한) ① ----- ----- <u>수사기관의</u> ----- ----- ----- ----- <u>전기통신번호(연결되어 있는 착신회선의 전기통신번호를 포함한다) 및 해당 이용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u>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